

지역환경기준설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I. 개요

1. 목적

서울특별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역환경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절차와 기준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환경기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코자 한다.

2. 추진배경

국가는 환경오염과 위해를 예방하고 적절한 정책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에 따라 지역환경 여건이 변화되고 있고,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 욕구의 증대로 인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책무 또한 증대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 대전시 등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환경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환경기준 제정의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환경기준설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역환경개선 의지를 확산시키고 지역환경기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지역환경기준 설정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운영사항은 결여

3. 법적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제3항
- "시·도지사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4. 선진 각국의 지역환경기준 설정 사례

○ 일본

- 일본 오사카부의 경우 국가환경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다만, 국가기준에서 제외된 HC에 대한 기준도 추가로 설정·운영하고 있다.

○ 미국

- 미국의 California주의 경우 연방 정부보다 강한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역대기질관리청(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에서 대기환경기준 달성여부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 캘리포니아주 및 연방 대기환경기준치

- O₃ : 주정부기준 0.09ppm/1시간, 연방기준 0.12ppm/1시간
- NO₂ : 주정부기준 0.25ppm/1시간, 연방기준 0.053ppm/1년간
- SO₂ : 주정부기준 0.04ppm/24시간, 연방기준 0.14ppm/24시간
주정부기준 0.25ppm/1시간, 연방기준 0.03ppm/년
- PM10 : 주정부기준 30마이크로그램/입방미터/년, 연방기준 50마이크로그램/입방미터/년

II. “지역환경기준”의 의의

1. 의의

“지역환경기준”이란 시도지사가 관내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여건과 해당주민의 환경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설정한 지역단위의 환경행정 목표치이다. 따라서 지역환경기준은 국가환경기준의 범위내(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수준)에서 자치단체의 각종 여건과 환경현황 및 달성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2. 환경기준·지역환경기준·배출허용기준의 비교

○ 환경기준

- 특 성 :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에 요구되는 국가 행정목표치
- 법 적 근 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11조
- 설 정 주 체 : 국가
- 적 용 대 상 : 국가
- 법적 구속력 : 없음.

○ 지역환경기준

- 특 성 : 환경분야에 대한 지역단위별 행정목표치
- 법 적 근 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3항
- 설 정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 적 용 대 상 : 시도(시·군·구)
- 법적 구속력 : 없음.

○ 배출허용기준

- 특 성 :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 최대허용치
- 법 적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등 개별법
- 설 정 주 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
- 적 용 대 상 : 공장 및 사업장

- 법적 구속력 : 법적 구속력이 있고 미준수시 처벌의 대상

III. 규정의 주요 내용

1. 제정절차

지역현황 분석 및 대책수립 등 → 지역환경기준(안) 설정 → 각계 의견 수렴 → 환경부 승인 → 지역환경기준 공포

2. 주요 골자

-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규정 제1조).
- 지역환경기준 제정시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관할지역 환경관리청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함(규정 제3조).
- 시도지사는 일정요건을 구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지역환경기준의 승인을 요청함(규정 제4조 제1항).
-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에서 승인 요청한 지역환경기준의 타당성, 달성 가능성, 오염저감계획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환경기준을 승인하는 등 지역환경기준 승인절차를 마련함(규정 제4조 제2항).
-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해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재원 확보방안 등을 마련함(규정 제5조).
- 시도지사는 승인된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여부에 대하여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함(규정 제6조).

3. 업무 분담

- 환경정책실 : 규정 운영, 2개국 이상 업무관련시 총괄 승인
- 각 사업국 : 소관 지역환경기준(안)에 대하여 검

정책 II

토승인

- 지역환경기준의 달성 가능성 및 정책수단의 실효성 등에 대하여 검토
- o 환경관리청 : 관내 지역환경기준의 달성 가능성 여부 등 검토

4. 운영체계

1) 수립(자치단체)

- 지역환경현황 및 오염물질발생량 예측
- 지역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저감계획 수립 등
- 지역환경기준(초안) 설정

(2) 공청회 개최(자치단체)

-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 지역환경기준(안) 마련

(3) 승인(환경부)

- 제출된 지역환경기준(안)을 검토 승인
- . 환경기준의 적정 수립여부
- . 지역환경기준의 달성 가능성
- . 오염저감계획의 효과성 검토

(4) 조례제정 및 공포(자치단체)

- 조례제정 및 공포
- 지역 주민 등에 적극 홍보

(5) 유지 및 관리(자치단체)

- 지역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각종 대책추진
- 연도별 지역환경기준 평가보고서 제출
- * (1)-(5) 평가조정

IV. 향후 조치사항

- o 동 규정 확정.인쇄(9월초)
- 관계 실.국 의견 검토결과 이견없음.
- . 대기보전국 : 지역환경기준 승인 요청시 시민, 전

문가의 의견수렴 자료제출

- . 법무(담) : 조문검토 및 자구조정
- o 각 실.국, 환경관리청, 전국 16개 시.도에 배포(9월 중순)
- 지역환경기준 설정시 참고
- 각 시.도에서 지역환경기준 승인 요청시 검토

<참고자료>

<<지역환경기준설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997.9.11 환경부 예규 제160호

제1조(목적)

이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역환경기준을 설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환경기준의 정의 등)

(1) "지역환경기준"이라 함은 시.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지역환경기준은 당해 지역의 환경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환경기준보다는 엄격히 정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3조(공청회 개최 등)

(1)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환경기준 승인)

(1)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지역환경기준 제정의 취지 및 지역환경기준(안)
2. 인구,산업,경제 및 토지,해양 이용 등 환경여건 현황 및 추세
3. 당해 지역의 오염물질배출 현황 및 전망
4. 지역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대책
5.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6. 기타 시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역환경기준 승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역환경기준 설정의 타당성, 달성 가능성, 오염물질저감계획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지역환경기준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또는 **통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환경부장관은 지역환경기준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1)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개선과 오염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역의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마련
3.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 등

(2) 시도지사는 승인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설정된 지역환경기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보고서 제출 등)

(1) 지역환경기준을 승인받은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보고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평가보고서에는 그간 추진된 각종 오염저감대책과 오염도 변화정도 및 향후 추진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보고서 제출의 특례) 이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평가보고서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그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법

○환경부령 제 30 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1997년 9월 18일
환경부장관인

1. 개정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1997. 3. 7. 법률 제5301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새로이 도입된 합병정화조의 설치신고절차·설치기준과 품질 및 성능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수처리구역안에 설치된 기존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방류수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완화하며, 스키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등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하수처리구역안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에 대하여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스키장에 대하여는 골프장과 같은 방류수수질기준(BOD, 부유물질 10mg/l 이하)으로 강화하는 등 오수처리시설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9조 및 별표 1).

나. 합병정화조의 방식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동시설의 설치신고절차·설치기준 및 품질·성능기준과 정화조제조업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16조·제18조·제90조·제91조 및 제

94조).

다.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시설의 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0조).

라.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중 여성용변기를 5개에서 8개로 조정하여 남자용 변기수와 같도록 함(안 제35조).

마.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가동 개시일부터 5년마다 환경관리공단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동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동 시설의 정상적 가동에 문제가 있는 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함(안 제44조 및 제67조).

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뇨를 동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최종처리하기 전의 처리과정에 필요한 시설만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안 별표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3조제1항제1호바목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인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제1호의 기타 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의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스키장의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1999년 3월 7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환경법

③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3조제1항제1호바목의 지역에 설치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제3호가목의 기타 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인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은 제15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분뇨 및 축산폐수의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재활용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활용 신고대상인 자로서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40조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운영중인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53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초지 또는 농경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등관련영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분뇨등관련영업자 또는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흡인식장비에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정화조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화조 설계·시공업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

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정화조제조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화조제조업자 또는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2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등록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15,474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증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증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

1997년 9월 8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윤 여 준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개정이유

환경법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되,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공공주택등의 50미터이내 주변지역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대상 지역으로 정하여 배출시설의 소음·진동으로부터 보호하고 배출시설을 소규모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음관거를 위하여 제작차의 소음허용기준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그 면제대상의 범위를 군용·소방용자동차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할 지역을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 및 공공주택등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이내의 지역으로 정함(령 제2조제2항)
- 나. 종전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변경되는 규모에 관계없이 가동개시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배출시설규모의 100분의 30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령 제3조)
- 다. 종전에는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통합여부에 대한 인증을 면제·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인증의 면제·생략대상의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증의 면제대상을 군용 및 경찰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등으로 정하고, 인증의 생략대상을 국가대표선수용 및 훈련용 자동차 등으로 정함(령 제6조의 2)

◎대통령령 제15,475호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1997년 9월 8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윤여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이유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환경여건이 변화하더라도 재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고, 또한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사중지명령외에 달리 행정제재수단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제도가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일정한 기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재협의를 하도록 하고, 또한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1997. 3. 7, 법률 제530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재협의대상이 되는 사업미착공기간,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징수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받은 사업을 협의완료후 5년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재협의하도록 함(령 제13조제1항)
- 나.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업규모가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강구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령 제14조제2항)

환경법

다. 모법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부과대상오염물질의 종류, 부담금의 산정방법·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령 제14조의 3 내지 제14조의 9)

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저유시설 및 신항만건설사업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반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분뇨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 등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적어 이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령 별표1)

마. 사업계획의 승인·허가후 기존 사업규모를 확장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가 100분의 15이상 확장되는 경우에는 확장부분을 포함한 전체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령 별표1)

㉠환경부령 제31호

하수도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97년 9월 19일
환경부장관 ㉠

하수도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개정이유

하수도를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하수도시설 관리업무의 민간위탁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하수도사업의 경제성·기술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하수도자문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는 등 하수도법시행령이 개정(1997. 9. 5, 대통령령 제15473호)됨에

따라 동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하수도시설 관리업무의 민간위탁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하수도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하수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변경인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하수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용량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대상에서 제외하여 하수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제2조제1항)

나. 하수도사업의 기술성·경제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도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조의2제1항)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사업자 등을 하수도시설 관리업무의 위탁대상기관으로 정함(제3조의2)

라. 하수관거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관거의 시공·감리 및 준공관계자의 성명을 기재한 하수관거공사관계자현황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함(제7조제2항 및 별지 제8호의2서식)